

「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」

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

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휴게시설 신설·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7. 21.

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

1 사업내용

- 관련근거
 -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
 -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
- 사업목적 :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성장 도모
- 공 고 명 :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
- 사업기간 : 2025. 7. ~ 2025. 12.(지원기간 : 협약체결 후 3개월)
- 지원대상 : 충북 진천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(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)
- 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기업	지원금액	비 고
휴게시설	▶(휴게시설 신설) 벽체, 바닥, 천장마감,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	1개사	기업당 최대 9,450천원 이내	사업비 지급은 신규인력 채용 확인 후 지급
	▶(휴게시설 개선) 벽체, 바닥, 천장마감,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			

※ (휴게시설) 신규인력* 1명 채용시 최대 9,450천원 지원

* 신규채용 인정기간 : '25. 3. 1. 이후

○ 공고기간 : 2025. 7. 21.(월) ~ 2025. 8. 04.(월) 16:00까지

○ 추진절차



※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모집제외 기업

- ▷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- 의무사항(각종보고서, 기술료납부, 잔액 및 환수금) 불이행
 -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,000% 이상인 경우
- ▷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분야(작업환경개선,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)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

※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○ 지원 불가항목

- 단순 인테리어 개선, 간판 교체, 문구, 집기류 구매 등 작업환경 개선과는 무관한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불가
-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아닌 단순 소모품 구매 불가

- ▷ 2025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
-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(소모품이더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(자산)으로 분류)

<집행 관련 법규>

※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(보조금 사용방법),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제 16조제3항(보조금 사용기준)

2 신청방법

- 공고기간 : 2025. 7. 21.(월) ~ 2025. 8. 04.(월) 16:00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
 -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(www.cbjobtalk.co.kr) 사업공고 접수

*** 접수 및 참가 자격 확인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 기준으로 진행**

- 제출서류(오프라인)

No	제출서류	부수	비 고
1	사업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	원본 1부	붙임1
2	이중구조 협약서	원본 1부	붙임2
3	서약서	원본 1부	붙임3
4	이중구조 개인정보수집동의서	원본 1부	붙임4
5	건물주(임대자) 사업참여 동의서 - 해당시 제출	원본 1부	붙임5
6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	원본 1부	
7	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	원본 1부	
8	최근 재무재표(2024)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	원본 1부	
9	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	원본 1부	
10	대상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(용도 및 명의 확인용)	원본 1부	
11	견적서	원본 1부	

* 제출서류 1~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((A4, 단면)하여 본드 접착이나 바인더,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

- 접수처 :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
혁신지원센터 사업담당자

***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보관용으로 활용**

3 기타 유의사항

- 접수 및 참가 자격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기준으로 확인하며, 자료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서류 검토 시 조건 미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,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

-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이 확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음
- 모집제외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공고에 제한될 수 있음
-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
 - 매출 증빙 : 표준재무재표,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등
 - 채용 증빙 :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
 - 기타 필요 증빙 자료
-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-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(행사, 세미나, 간담회, 협의체 등) 적극 협조 필요
- 신청기업에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
- 사업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시 기업 신청금액 중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(예) 자산취득비)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음
- 신규인력(3월 1일 이후 채용인원) 채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
 - (휴게시설)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9,450천원 지원
-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
- 1차년(2024년)도 참여기업은 동일프로그램 참여 제한
- 1차년도 참여기업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자부담 10% 부담(부가세 제외)
- 관련규정
 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(보조금 사용방법)
 -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제16조제3항(보조금 사용방법)
 - 2025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

4 문 의 처

-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사업담당자
 - 전 화 : 043-852-2897
 - 전자메일 : jhl@cbist.or.kr